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 대응과 119 현장대응력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에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5급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합구매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감1,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소방헬기의 안정성 강화 및 신속한 출동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령 2명, 소방위 1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급여시스템 운영과 소방헬기 통합관제 사무를 각각 일원화하면서 인력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사무분장과 소방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부무담당관·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으로, 혁신행정부무담당관·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관리
 3. 각종 지시사항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청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6. 중기 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7.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9.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10.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11.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운영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및 제도개선
11.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6.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의 복제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방법·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조정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승
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평가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
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의 시행·평가
9.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
급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2. 시험의 출제·관리·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화재대응조사과·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되,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평가·지원·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재해, 그 밖의 상황의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화재진압·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시행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감독·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 유지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
한 사항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지원

13. 화재피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중
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
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

한다)

9.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관리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도 구급서비스의 총괄·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운영
 18. 재난현장에서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소방분석제도과·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되,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4. 화재보험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포상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피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2.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 석유화학단지과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보급 및 사고예
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⑤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생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
구·개선
 2. 국민생활 소방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
산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

항

8.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생활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의 개발·보급
10.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12. 한국119청소년단의 지도·감독 및 지원

제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소방항공과·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되,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표준화·보급·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
의 정보 교환·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항공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소방항공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대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9. 소방항공기 항공보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항공기 항공유 보급 및 공급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1. 소방항공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감독 등에 관한 사항
12.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항공기의 출동·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5. 소방항공기 운항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16.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8. 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조정
 14.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5. 소방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16. 소방정보통신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17. 소방정보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1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9. 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20.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21. 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23.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24.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5. 119 신고접수·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시·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조정
 26.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경비의 지원
6. 소방산업 통계·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감독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품의 수집·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검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운영
15. 소방시설업의 육성·관리 및 지도·감독
1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6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 및 교

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 보안 · 비상계획 · 문서의 분류 · 접수 · 발송 · 통제 · 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
사무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 · 운영
5. 회계 · 용도 · 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 · 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 · 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 · 감독
9. 전산 · 통신장비의 운영 · 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 · 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 · 평가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 · 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 ·
운영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조정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안전·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자연재해위기대응·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

이선) 운영

3. 지휘훈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3.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관리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7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

련과 · 특수장비항공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
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119구조상황실장 · 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
로, 특수장비항공팀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지휘 · 조정 · 통제 기능
2.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본부의 설치 · 운영
3. 재난진행상황 파악 · 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 ·
분석 · 전파
4.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5.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
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 · 통신 및 방송시설 · 장비의 유지 관리
7.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 · 운영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 · 구급대책 수립 · 시행
13. 화학 · 생물 · 방사능 · 핵 · 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

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14.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15.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16.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17.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8. 그 밖의 특수사고·특수재난의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지원 활동

12.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특수구조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도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⑥ 특수장비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인명구조장비·전산장비·통신장비·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관련 사항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11.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
적 관리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7.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구조견의 양성훈련·관리 및 시·도예의 보급
 2. 119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119구조견의 국제교육·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119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119구조견의 평가 및 119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 119구조견 및 119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유지관리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8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0. 관할구역 시·도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1.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제9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

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침단장비 관리·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제5장 국립소방연구원

제10조(국립소방연구원장) ① 국립소방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 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0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소방청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8장 한시조직

제16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수도권119 특수구조대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영남119 특수구조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호남119 특수구조대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수도권119 특수구조대	시흥119 화학구조센터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영남119 특수구조대	구미119 화학구조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산119 화학구조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호남119 특수구조대	익산119 화학구조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여수119 화학구조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서산119 화학구조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주119 화학구조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총계	265
소방공무원 계	231
소방총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준감	7
소방정	17
소방령	60
소방경	56
소방위	63
소방장	16
소방교	6
일반직 계	34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기록연구사, 공업연구사, 시설 연구사 또는 소방경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 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	1

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 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관제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총 계	61
소방공무원 계	55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4
소방경	9
소방위	16
소방장	14
소방교	5
소방사	3
일반직 계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
간호주사	1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총계	440
소방공무원 계	383
소방감	1
소방정	7
소방령	24
소방경	40
소방위	63
소방장	76
소방교	91
소방사	81
일반직 계	57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문경력관 가군(정보분석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8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9
전문경력관 나군(정보분석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관련)

총계	42
소방공무원 계	18
소방정 이하	18
일반직 계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4급 이하	22
전문경력관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5조 관련)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	7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3명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	3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4) 장비기술국	1명 (소방감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6명 (소방준감 1명, 소방령 3명, 소방위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4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5급1명, 소방위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2
소방공무원 계	2
소방정	1
소방위	1